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3. 6.
여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3월 31일, 이달곤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2년 4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2.9.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3.5.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6.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달곤의원)

현행법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청소년쉼터를 두고 있음.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성장 환경 또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의 성장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망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하여 매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자립 수당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및 32조의4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의 전체 청소년이면 입소기간과 퇴소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자립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원의무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 보호,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을 청소

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경희)

개정안의 내용을 채택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